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2723 제출연월일: 2021. 9.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 조의2 신설)
 -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 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 제1항제7호 신설)
 - 1)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2)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 조의9 신설)
 -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 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안 제4조제6호 및 제37

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 39조의15까지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

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64조의2 신설)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를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 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 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5항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 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8제7호 중 "지원·보급"을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로 한다. 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를 "제64조의2"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의 제정·시행 지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 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규약의 제정 개정
- 2.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 선 활동
- 4. 그 밖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일 것
- 2.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출 것
- ④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자율규제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3(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① 자율규제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자율규제단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및 평가
 - 2. 자율규약 제정·개정 지원 및 이행 점검
 - 3.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컨설팅 지원
 - 4.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 5. 그 밖에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정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 가피하게"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제2호·제3호"를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28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요구"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고지"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

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 집·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을 "방법"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을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를 "(이하 "고정 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에 대하여는"을 "시설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중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을 "관리책임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 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한다.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 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 다.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 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에 의하여야"를 "문서로 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8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가명정보를"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로 한다.

제28조의6을 삭제한다.

제28조의7 중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를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을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로 한다.

제3장에 제4절(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 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
-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 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 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다.
 - 1. 제30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 개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된다"를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 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 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출되었음"을 "분 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으로, "사실" 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출된"을 각각 "유출등이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출로"를 "유출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출되"을 "유출등이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 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을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로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 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 본인
 -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 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 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할 것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 추었을 것
 -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절차, 관리·감독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거절하였을 때에는"을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

지의 요구, 처리정지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로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에 따라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절차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를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 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공공기관이"를 "개인정보처리자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자료의 요청 등)"을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거부"를 "수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락한 경우"를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 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로,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를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훼손,"을 "이용, 훼손,"으로 한다.

제60조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 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
 -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7. 제28조의8(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8. 제28조의9(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다)를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11.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 와의 인과관계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정도
-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 는 영향의 정도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보호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 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 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

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제1호 중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를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6.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10.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2.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 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13.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15.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6.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아니한 자
- 17.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8. 제35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송을 거부한 자
- 19.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 자
- 2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37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3.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 24.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5.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

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의4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3, 제60조제5호, 제75조제2 항제19호, 제7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2. 제3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
- 제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된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2 및 제4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

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제28조의6.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 ----- 설치되어 지속적 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 | 또는 주기적으로 -----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를 말한다. <신 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 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 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 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치를 말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u> ⑤ ----- <u>제30조에</u> <u>처리방침</u>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u>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u> -----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2. (생략)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 인하고 개인정보에 <u>대하여 열</u> 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5. (생 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신 설>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1. · 2. (현행과 같음)
3
대한 열람(사
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u>같다) 및 전송</u>
4.•5. (현행과 같음)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
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

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권리

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 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 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신 설>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 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1. ~ 6. (생 략)
 -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 7. -----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생략)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 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 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 하여야 한다.

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 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 다.
- 무) -----

1. ~ 6. (현행과 같음)

준화 -----

개발의 <u>지원·보급</u> 및 전문인 ---- <u>지원·보급, 기술의 표</u>

8. (현행과 같음)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 1. ~ 7. (생략)
 - 8. <u>제28조의6</u>, 제34조의2, 제39 <u>조의15</u>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9. ~ 16.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 런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생 략) <u><신</u> 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 사항 등) ①
<u>.</u>
1. ~ 7. (현행과 같음)
8. <u>제64조의2</u>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자 율규제 규약(이하 "자율규약" 이라 한다)의 제정·시행 지 원
 - 5.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 자율규 제단체의 지정) ① 보호위원회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이하 "자율규제 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 다.

- ②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규약의 제정 · 개정
- 2.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 4. 그 밖에 소속 개인정보처리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일 것
- 2.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출 것

- ④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 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약을 제 정·시행하는 자율규제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3(자율규제단체 연합회 의 설립) ① 자율규제단체와 개 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활동

<신 설>

- 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의 허가를 받아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는 다음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및 평 가
- 2. 자율규약 제정·개정 지원및 이행 점검
- 3.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4.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 성
- 5. 그 밖에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는 사업
- 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6. (생략) <신설>

②・③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님	<u>ا</u> ا	민법	」의	재딘	법인에	관
한	규정·	을 {	존용학	한 <u>다.</u>		
$\overline{(7)}$	제1호	나에	따르	. 자-	유규제다	l-체

①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정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プ	H인정보의	수집•	이용
1110		1 🗆	10/

①

- 1. ~ 3. (현행과 같음)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 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 6. (현행과 같음)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2 0 (1.89)	EDI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
 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생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저 ·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세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레1트코 레1루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 <u>제15조제1항</u>
------ <u>제28조의8</u>
<u>제1항</u>-----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 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한다.

- 1. ~ 9. (생략)
- ③ ~ ⑤ (생 략)

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

•
②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 9.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 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u>요구</u>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 ③ (생 략)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에 한하다.
- 1. <u>고지</u>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u>고지</u>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 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u>A)</u> ①
1. · 2. (현행과 같음)
3
<u>요구하거나 동의</u>
<u>를 철회</u>
② ~ ③ (현행과 같음)
4
1. <u>통지</u>
2. 통지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_____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처리자는 제15조 또는 제23조 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 용 · 제공 내역이나 이용 ·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 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 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 •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 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

<u>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u> <u>이 조에서 같다)</u>-----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u>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
② ~ ⑤ (현행과 같음)
<u><</u>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u>방법</u>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 2. (생략)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 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의 설치·운영 제한) ① ----------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1.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 운영하는 경 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u>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3. <u>관리책임자 성명 및</u> 연락처 4. (생 략)

③ <u>고정형</u>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u>7</u>]
·.
④ <u>고정형</u>
영상정보처리기기
(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라 한다)
<u>시설의 경우에는</u>
1.・2. (현행과 같음)
3. <u>관리책임자의</u>
4. (현행과 같음)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 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 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

\bigcirc	<u></u>	<u>8 6</u>	O'	<u>ở ở</u>	<u> 노</u> ^	<u> 1 </u>	<u> </u>	<u> </u>	긴
<u>영자</u>	느	고?	정형	영	상경	보	.처	리	기
기의	설	치	목격	넉과	다	른	목	적	<u>0</u>
로 3	고정	형	영건	<u>상정</u>	보き	리	기	기	를
6	고?	정형	영건	<u> 상정</u>	보き	리	7]	기	운
<u>영자</u>									
	-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フ] -----

다. 다만, 공공기관이 <u>영상정보</u> 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 <u>고정형 영</u>
<u>상정보처리기기</u>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 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 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 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 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 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2 -----

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생략)

①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 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 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_____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 자"라 한다)-----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 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 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 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 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 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 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 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 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및 제63조를 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관리·감독을 행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u>가명정보를</u>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

<u>자"는 "수탁자"로 본다.</u>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
독) ①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
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
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
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u>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u>
<u>나 가명정보를</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에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 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 제35조, 제35조의2, 제36 조 및 제37조를 -----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국외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우

-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

 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u>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u> <u>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u> <u>방침에 공개한 경우</u>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 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

 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신 설>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 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 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 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 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

<신 설>

<신 설>

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 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 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 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 는 자"로 본다. <신 설>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 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30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 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 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 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 등) ①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 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② (생략)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 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 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 다.
- ④ (생략)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u>利</u> 3
<u>항</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제3항</u>
되며, 개인정
보 보호책인자가 업무륵 독립적

<u><신 설></u>

<신 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 <u>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u> 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8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 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 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 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 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 편 주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 려야 한다. <단서 신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5. (생략)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 -- 유출등이 된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 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① -------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 음----- 사항--------.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 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
- 2. 유출등이 된 -----
- 3. <u>유출등으로</u> -----

- 4. 5. (현행과 같음)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 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 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 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 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 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 ③ ----- 개인정보 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 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
 - 제 · 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 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 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아니하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 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 의 정도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 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 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 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 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u>1. 정보주체 본인</u>
-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
-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 족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 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할 것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 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신 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

 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

 분석
-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 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모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 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

력을 갖추었을 것

-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저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u>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공공기관에 <u>대하여는</u>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u>정지를 요구할</u>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u>제1항에</u>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지정절차, 관리·감독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세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
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u>수 있다</u> <u>대해서는</u>
<u>정지를 요구하</u>
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
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u>
따른 처리정지 요구
·.
1. ~ 4.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u>거</u>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지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 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 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 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 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 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 의 기준 • 절차의 공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신 설>

<u>제35</u> 조의2에 따른 전송, 제
<u>36</u> 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
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
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
명
②・③ (현행과 같음)
4
<u>이 경우 열</u>
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
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u>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
 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 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 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
- 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삭 제>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 <삭 제>

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 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

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 지 · 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 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 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 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 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 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 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 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삭 제> 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 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 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 다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 <삭 제>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 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

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 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 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 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 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 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 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 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 품·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 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 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 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 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 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반 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방송법」제2조제3호가 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삭 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 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 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삭 제>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 · 제공한 경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 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 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 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 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 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 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⑨ (생 략)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 ③ <u>공공기관이</u> 제2항에 따른 분 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 에 응하여야 한다.
- 제45조<u>(자료의 요청 등)</u> ① (생략)

<신 설>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30명</u>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개인정보처리자가</u>
 제45조 <u>(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u>
등) ① (현행과 같음)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
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제47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 ③ <u>제1항</u>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 지 아니하면 조정을 <u>거부</u>한 것 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 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 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 제47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 행과 같음)

 - ④ ----- <u>수</u>락한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신 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 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 1. 2. (생략)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 는 개인정보

4. (생략)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 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 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 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장-----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u>영상정보처리기</u>
<u>기</u> 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u>대하여는 제15</u> 조,
<u>제22</u> 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u>훼손,</u>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 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정형 영상정보
<u>처리기기</u>
<u>대해서는 제15조,</u>
제22조, 제22조의2,
③・④ (현행과 같음)
제59조(금지행위)
1. • 2. (현행과 같음)
3
<u>이용, 훼손,</u>
제60조(비밀유지 등)
A(100年(日 豆)(A)

1. (생략) <신 설>

1의2.・2. (생 략)

<신 설>

3. (생략)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 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

- 1. (현행과 같음)
-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3. 4. (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 와 같음)
-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 6. (현행 제3호와 같음)

회는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고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

- 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 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한 경우
-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 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 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7. 제28조의8(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

우

- 8. 제28조의9(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경우
- 11.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 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다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 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 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이행 노력 정도

-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의 정도
-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이행 여부
-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및 규모
-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 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 ⑦ 보호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 제 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 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66조(결과의	공표)	1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
<u>과, 제65조</u>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 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 령----.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 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 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 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 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 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 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 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 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 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

-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 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 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u>함한다)을</u>위반하여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u>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u> <u>한 자</u>
-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반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 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수집한 자

-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 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 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 음기능을 사용한 자

2. · 3. (생 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 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 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
- 2. · 3.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 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 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벌금에 처한다.

-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한 자
- 4. 제21조제1항 · 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

-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 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3항 · 제22조제5항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

- <u>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u> 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 <u>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u> 한 자
-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 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 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

-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 한 자
-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한 자
- 6.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8조의4제1항 · 제

- <u>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u> <u>표시하거나 홍보한 자</u>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u>자</u>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 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한 자
-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10.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2.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 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 하지 아니한 자
- 13.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 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 한 자
-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 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
-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 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 하지 아니한 자
-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 14.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 하거나 홍보한 자
- 15.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 지 아니한 자
- 16.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한 자
 - 18. 제35조의2제3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송을 거부한 자
 - 19.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 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 리하지 아니한 자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 20.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 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37조의2제2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3.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4.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

 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아니한 자
-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

- 25.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 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1항·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의4제2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 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 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 나한 자
- 8.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u>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u> <u>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u> <u>자</u>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 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0.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 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 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 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